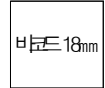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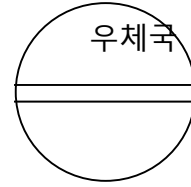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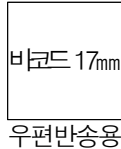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우편반송용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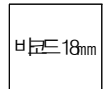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기 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	-----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전자납부 번호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합 계	
-----	--

납기 후: 까지	
----------	--

납기 후 세액	
---------	--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

직수납인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	---------------	---------------------------	----------------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주 소	
-----	--

과세대상	수납용
------	-----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내금액	납기 후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	-------	--------	------	------

재산세	재산세(주택)			까지
-----	---------	--	--	----

	도시지역분			원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지방교육세				원
-------	--	--	--	---

합 계				까지
-----	--	--	--	----

납기 후: 까지				
----------	--	--	--	--

납기 후 세액				
---------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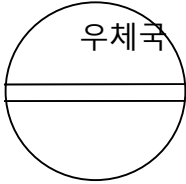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주택)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제141조 ~ 제154조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 가산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
과세 표준 (×)	재산세(주택) 과세 표준 (×)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세율	과세 표준	표준세율	서울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출세액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심판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세부담상한 초과액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구분	과세 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 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자치단체 활용란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바코드 18mm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mm

자동납부 현황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주(소유주)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년 주택 기본 재산세				
성명(법인명)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자동이체(납부)일	원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실 금액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주택)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당자		
합 계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